

#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

##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

2017.08.01. 제정

### 제1조(목적)

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법') 제58조(수수료)에 의거하여 ㈜ 토브 파트너스(이하 '회사'라 한다.)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적용범위)

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(이하 '관련 법규' 라고 한다.)에 규정된 사항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제3조(용어의 정리)

이 기준 및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'기본수수료'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계약금액에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써 운용성과와는 관련 없는 자문계약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말한다.
- ② '성과수수료'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 시점에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.

### 제4조(수수료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투자자문계약의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되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.
- ③ '성과수수료'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2(성과보수의 제한)에 관한 법률과 제99조의 2에 근거에 따라 징구 함.

## 제5조(설명의무)

회사는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## 제6조(공시)

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### 제1조(시행일)

이 기준은 2017.11.21. 부터 시행한다.

[별지]

투자자문 수수료 산정방법

당사의 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다.

**1. 기본수수료**

자문성과에 상관없이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

- 기본수수료 : 계약금액의 0.5%(선취)

**2. 성과수수료**

	성과수수료 부과기준 (고객수익 구간)	수수료 요율
1구간	5 ~ 15%	고객수익의 15%
2구간	15 ~ 30% 초과	고객수익의 30%

※ 펀드 운용의 특징상 리밸런싱 시점 또는 환매 시점 징구

**3. 수수료 지급시기**

- ① 기본수수료 : 계약 체결일 당일
- ② 성과수수료 : 지급조건 충족 시 납부의무일 3영업일 이내